

(앞쪽)

법 인 설 립 허 가 신 청 서			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	④전 화 번 호	
법 인	⑤명 칭			
	⑥소재지		⑦전 화 번 호	
	⑧대표자 성명		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	
	⑩주 소			
<p>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물및해양경찰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top: 20px;">귀하</p>				
※ 구비서류				수수료 없 음
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약력을 기재한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) 1부 2. 정관 1부 3. 재산목록(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)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의 출연 또는 기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당해 사업연도분(당해 사업연도의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분 및 다음 사업연도분)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.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. 창립총회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사본 1부				

210mm x 297mm(일반용지54g/m²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쪽)

